교수-자녀간 수강신청 및 성적평가 공정성 제고 시행지침

제정 2019. 02. 21.
제3차 개정 2020. 12. 30.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교수-자녀간 수강신청 및 성적평가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특혜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, 학사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지침은 우리대학교 소속의 교원(강사 포함) 본인 및 자녀에게 모두 적용한다. (개정 2019. 07. 26.)

제3조(강의 회피 및 사전 신고제) ① 학생은 수강하고자 하는 과목의 담당교수가 부모인 경우 가급적 수강신청을 하지 않도록 한다. 단, 분반이 없는 필수과목 이수 등의 사유로 부득이 부모의 강의를 수강해야 하는 경우 담당교수에게 사전신고서 제출을 요청하여야 한다.
② 소속 학과(부)장 또는 지도교수는 소속 학과 학생이 부모의 과목을 가급적 수강하지 않도록 신입생 오리엔테이션, 수강신청기간 등을 통해 수강지도를 하여야 한다.
③ 학사지원팀은 수강편람, 수강신청시스템 등에 부모의 과목을 가급적 수강하지 않도록 공지하여야 한다. (개정 2020.12.30.)
④ 담당교수는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이 자녀인 경우 사전에 수강신청을 하지 않도록 지도하여야 하며, 필수과목 이수 등의 사유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"교수-자녀간 수강신청 사전신고서(별지 제 1호)"를 작성한 후 수강변경기간 종료일 내에 학과(부)장 및 학장을 경유하여 학사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. 단, 신청사유가 불분명한 경우 수강 변경 및 수강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. (개정 2019. 03. 27, 2020.12.30.)

제4조(성적평가 및 자료보관) ① 사전에 신고하고 부모의 강의를 수강한 경우 담당교원은 성적부여 후 10일 이내 성적산출 근거(출석부 사본, 과제물, 시험지 등)를 소속 학과(부)장에게 제출하고, 학과(부)장은 성적 공정 여부를 확인한 후 결과를 학사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. (개정 2020.12.30.)
② 해당 학생의 성적평가 관련 자료는(출석부, 시험지, 답안지, 과제물 등) 10년간 보관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5조(위반 시 제재조치) 제3조 제4항 및 제4조를 이행하지 않거나 특혜 등 공정성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재할 수 있다.

부 칙
이 지침은 2019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①(시행일) 이 지침은 2019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②(경과조치) 이 지침은 2019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①(시행일) 이 지침은 2019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②(경과조치) 이 지침은 2019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이 지침은 202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(별지 제 1호 서식)(개정 2020.12.30.)

교수-자녀간 수강신청 사전신고서

	학과(부)장	학장	담당	팀장	처장
경유					

신 고 인	성 명		소 속	
	교원구분 (전임/겸임 등)		학생과의 관 계	
	연 락 처		비 고	
해당학생	성 명		소속학과(부)	
	학 년		학 번	
	연 락 처		비 고	

신청과목 및 신청사유	이수구분		교과목명			
	교과목코드		분 반		학 점	
	신청사유(구체적으로 기재)					

교수-자녀간 수강신청 사전신고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.

신 고 일: 년 월 일

신 고 인: (인)

교육연구처장 귀하

<유의사항>

1. 신고서는 수강변경기간 종료일까지 학과(부)장 및 학장을 경유하여 학사지원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.
2. 신청사유가 불분명한 경우 해당 학생에게 수강 변경 및 수강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3. 자녀가 부모의 강의를 수강함에도 불구하고 신고서 미제출 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.